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 시부터 즉시	배포	
책임자	금융위 금융제도팀장 김연준(02-2156-9680)	담당자	김정주 사무관 (02-2156-9682)	
	금감원 감독총괄국장 최성일(02-3145-8300)		김태진 금융그룹감독팀장 (02-3145-8011)	

## 제목 :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

- 조건부자본증권 관련 사항 규정, 현장점검 건의과제 등 규제개선 -

- ① 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된 '은행지주회사 주식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'과 관련하여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
- ② 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의 최소 자산총액 요건을 완화(1천억 이상 → 5천억원 이상)하여 중소기업회사가 규제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소
- ③ 자회사등의 금융지주회사 업무 위탁시 사전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복합점포 관련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등 현장 애로 개선

### 1. 추진 배경

① **은행법·금융지주법 개정\***(16.7.30일 시행)으로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'은행지주회사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'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

\* (법 개정 前)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법인인 은행만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가능  
 → (개정 後) 은행지주(상장) 소속 은행(비상장)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해짐

② 현장점검시 금융회사 **건의과제, 행정규제 일몰사항\*** 등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

\*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3년마다 금융지주 관련 규제의 폐지, 연장 또는 개선 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규에 반영

### 2. 개정안 주요내용

#### (1) 은행지주회사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관련 위임사항 규정

□ "조건부자본증권"이란 **예정된 사유(trigger event)\***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**상각(상각형)**되거나 은행·지주회사의 **보통주로 전환(전환형)** 되는 사채임

\* (예)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

○ **은행법 개정**(16.7.30. 시행)으로 비상장법인인 은행도 **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해짐**

\* 단,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은 상장법인인 은행지주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은행을 100% 완전 지배하는 경우에만 발행 가능

□ 은행법과 함께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은 **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해당 주주가 주식보유 한도\***를 초과하는 경우

\* (동일인)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%, (비금융주력자) 의결권 있는 주식의 4%

○ 해당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하고,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금융위 승인을 받거나 **주식 매각 등 조치**를 취하도록 규정하면서, 그 이행기간을 시행령에 위임

⇒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보유 한도를 초과한 날로부터 **5영업일 내에 금융위에 보고**하고, **6개월 내에 금융위 승인**을 받거나 **매각 등 조치**를 취하도록 규정

\*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도 동일하게 규정(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)

**(2) 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의 최소 자산총액 요건 완화**

- (현행)** 금융지주회사 요건\*에 해당하는 회사는 1년 이내에 금융지주 인가를 받거나 요건을 해소해야함(금융지주법 §5-2②)
  - \* ① 1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지배할 것 ②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일 것 ③ 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%이상일 것
- 동 제도는 금융지주회사로 인가를 받아야 할 최소 요건을 정함으로써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이면서 인가를 받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,
  - **최소 자산총액 1천억원 요건이 낮은 편**이어서 금융지주 전환을 추진할 의도와 역량이 없는 **중소금융회사가 규제대상에** 해당되는 사례\*가 종종 발생
  - \* '07년~'15년 사이에 총 5개 회사가 동 요건에 해당되었으나, 대부분 1개 금융회사를 소유한 자산규모 1천억원~5천억원 수준의 **중소금융회사가** 규제 대상
- (개선)** 현행 금융지주회사의 자산 수준, 중소기업회사의 자본력을 고려하여 **최소 자산총액 요건을 5천억원으로 상향조정**(시행령 개정)

**< 관련 현황 >**

**① 금융지주회사 자산 규모('15말)**

지주사	신한	NH	하나	KB	BNK	한투	DGB	<b>JB</b>	<b>메리츠</b>
(조 원)	27.7	20.9	19.4	19.2	5.2	3.9	3.0	<b>1.8</b>	<b>1.2</b>

\* '07년 이후 최소 자산규모는 7,708억원('11년 메리츠)

☞ **최소 자산총액 요건을 1조원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현행 금융지주회사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우려가** 있어 1조원 이상으로 조정은 곤란

**② 중소기업회사의 자본력 현황** ('15말 금융지주 소속을 제외한 98개 회사 기준)

자산규모	<b>1천~3천억원</b>	<b>3천~5천억원</b>	5천억원~1조원
회사 수(개)	45	32	21
가중평균 자기자본(억원)	<b>607</b>	<b>575</b>	1,723

\* 자산 구간별로 자산가중치를 두어 가중평균 자기자본 산정

☞ **3천억원으로 설정할 경우 중소기업회사가 규제대상이 될 수 있고, 자산 5천억원 미만 금융회사간 자본력에 큰 차이가 없는 점**을 고려하여 **최소 자산총액 요건을 5천억원으로 현실화**

**(3) 복합점포 운영기준 합리화**

- (현행)** 금융지주 감독규정은 복합점포 운영과 관련한 **겸직·업무위탁은 금융위 승인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**하고 있어 불합리한 중복규제에 해당
  - \* 금융지주법 시행령 개정('15.12) 등으로 금융지주 및 자회사등간 겸직 및 업무위탁이 대부분 금융위 보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
- (개선)**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승인사항 이외의 경우에도 겸직·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**해당 규제를 폐지**

**(4) 자회사등의 금융지주회사 위탁업무 보고절차 폐지**

- (현행)**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 전산·법무·회계 등 **경영지원**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수행 7일 전까지 **사전보고**해야 함
- (개선)** 경영지원업무 위탁은 **이해상충, 위험전이 등의 우려가 거의 없어 보고절차를 폐지**
  - ☞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일몰 재검토 결과 반영

**(5) 금융위 승인 심사기간 명확화**

- (현행)** 금융지주 인가, 자회사 편입승인 등의 심사기간은 2개월로 규정되어 있으나,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 등 **일부 승인사항**\*에 대한 **승인 심사기간이 미비**
  - \*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(法 §8-2②),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 승인(法 §8-2③), 비은행지주로의 전환계획 승인(法 §22)
- (개선)** 다른 승인 심사기간과 같이 **2개월로 명확히 규정**

**3. 향후일정**

-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('16.5.12.~6.21)한 후 **법제처 심사, 차관회의·국무회의**를 거쳐 **공포 후 시행**
  - \* 다만, 조건부자본증권 관련 개정사항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일인 '16.7.30시행



 \*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http://www.fsc.go.kr>  
 금융위원회 대 변 인 [pfsc@korea.kr](mailto:pfsc@korea.kr)  
 넓게 들겠습니다  
 바르게 알려드립니다